

## 충청북도 학사 설치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

### 검 토 보 고

#### 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# 2. 제안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2년 2월 26일

나. 회부일자 : 1992년 2월 27일

#### 3. 제안이유

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충북학사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학사운영 수탁법인인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정관 및 제 규정은 제정되었으나 설치주체인 도는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 이의 설치근거 및 운영방안과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코자 함.

#### 4. 주요골자

- 학사설치의 목적, 위치, 기능을 규정
- 학사운영을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위탁 운영
- 학사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비용을 도비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- 학사시설을 목적의 사용하는 등의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학사운영 상황을 도지사가 검사 또는 감독 할 수 있도록 함.

##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학사 설치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

- 충북학사는 충북출신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입사케하여 수학에 따른  
숙식등 제반편의를 제공하므로서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차 충북 발  
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향토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바
- 수탁법인인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정관 및 제규정은 제정되어 있으나 설  
치주체인 도에는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15조  
에 의거 이의 설치 및 운영방안과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 재단법인 충  
북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충청북도 학사운영  
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승인 하여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 
다. 감사합니다.

-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  
니다.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 
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  
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박만순위원 위원장님!

○ 위원장대리 김기한 예, 말씀하세요.

○ 박만순위원 충북학사가 요즈음  
말도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런데  
재단법인 충북학사 정관과 본 조례안  
이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것같습니다.  
재단법인 충북학사 정관 4조에 감독  
청은 교육청으로 되어 있어요. 공익  
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.  
그런데 여기는 전부 도지사가 다 하

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감  
독청이 공익법인이 설립운영에 관한  
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  
북도 교육청이 된다 이겠는데 왜 조  
례안에는 전부가 다 도지사가 다 할  
수 있게 되었느냐 이게 근본적인 모  
순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조례안보다  
는 법이 상위법이에요. 그렇죠? 법이  
상위인데 왜 대치되는 규정이 있느  
나 또 그동안의 이렇게 보면은 법인  
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으로 운영을  
한다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 
런데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도비  
출연금 1억원과 그동안에 들어간 부  
지매입비 23억6천만원하고 건물 신  
축비 25억원의 황창의 충북은행장이  
도서구입비 300만원 기탁한 것 하고